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경기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민영 |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 (2023.12.06.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6.06.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전국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10년 | 3년 | 없음 | 적용 | 공공택지 |

I

공급개요 안내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8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9~34층, 6개동 총 889세대 (기관추천특별공급 16세대 포함)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주택형 : 59㎡, 84㎡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괄호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 구 분(약식표기) | 59㎡ | 84㎡ | 합 계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경기도 | 11(55) | 16(80) | |
| | 서울특별시 | 5(25) | 7(35) | |
| | 인천광역시 | 5(25) | 7(35) | |
| | 국가유공자 | 2(10) | 14(70) | 16(80)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3(15) | 10(50) | 13(65) |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3(15) | 10(50) | 13(65) |
| | 중소기업 근로자 | 4(20) | 12(60) | 16(80) |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공급일정 안내

| 구 분 | 일정 (예정) | 비 고 |
|-----------|---|--|
| 입주자모집공고 | 2024년 12월 06일(목)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건본주택 OPEN | 2024년 12월 13일(금) | ▶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2-2번지 |
| 특별공급접수 | 2024년 12월 16일(월) (09:00~17:30) | ▶ 한국 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 접수 ▶ 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한함 - 구비서류 미비시 청약신청 불가 |
| 당첨자발표 | 2024년 12월 24일(화)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당첨자계약일 | 2025년 01월 06일(월) ~ 08일(수) 3일간(10:00~16:00) | ▶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2-2번지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건본주택 |

- ※ 위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분양홍보관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시간 마감 이후에는 추가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V

특별공급

| 구분 | 내용 | | | | | | | | |
|-------------|---|--------------|---------------------------------|--------------|----------|-------------|-------|-------|-------|
| 공급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조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지역)</th> <th>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p> | 구 분 |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구 분 |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 | | | |



V

유의사항 안내

-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동일주택 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를 제외함)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에서 다른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은 불가하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등)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여부를 판정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5년 동안 사업주체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및 신청 취소 등 정정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04.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VI

위치도 / 견본주택 약도 안내

| 약도 | 안내사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 : 경기도 평택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8B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2-2번지 • 분양문의 : 031-657-0889 |